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 · 공포

ㅇ 대통령령 제30708호 및 고용노동부령 제285호('20. 5. 26 공포)

※ 시행일 : '20. 5. 27부터

2. 주요내용

□ 시행령

(1) **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구체화**(제4조의2 신설)

- **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**이면서 **공사기간 30일 초과**하는 **공공공사**

(2) **도급인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및 절차 규정**(제12조의2 신설)

- 회생절차개시,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공동관리 절차개시 등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
- 공제회는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요청이 가능하며, 도급인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공제부금 납부

(3) **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**(제6조 개정)

- **(공공)** 3억원 이상 → **1억원 이상**
- **(민간)** 100억원 이상 → **50억원 이상**

※ **전기, 정보통신, 소방,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(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)**

(4) **공제부금 일액범위 인상**(제12조제2항 개정)

- (기존)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→ (개정) 5천원 이상 **1만원 이하**

※ **공제부금 일액 6,500원 결정**(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 제2020-42호)

☞ (적용례) (1)제4조의2, (2)제12조의2 및 (3)제6조 개정규정은 **이 영 시행 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**(※ 입찰 공고하지 않는 경우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때)

□ 시행규칙

(1) **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규정**(제5조 개정)

(2) **피공제자 근로일수 직접신고 절차 마련**(제16조 개정)